## 서울특별시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영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2414 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9일

발 의 자 : 서영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재리, 이현찬, 이순자, 김경자(양천),

문영민, 김동욱, 최판술, 이정훈,

박진형 의원(9명)

#### 1. 제안 이유

동 조례는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뀜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며, 또한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임

#### 2. 주요 골자

- 가. 제복의 종류 중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제3조 제1항 제1호 다, 라. 마와 제2호 삭제
- 나. 제3조 제2항의 제복 만드는 방법(별표1)과 제6조 지급기준(별표 2)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.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.

- 1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"하복 등"이라 한다), 방한복
- 2. 모 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
-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표1.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했 혂 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 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 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. 구분한다. 1.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3조 의 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<u>가. 근무복 : 하복,</u> 동복, 춘추 복(이하 "하동복"이라 한다), 방한복 나. 모자 : <u>장식은 단속공무원</u> 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 장 다. 신발(부츠 포함) 라. 부속물 : 넥타이 • 타이핀 | 및 허리띠 2. 제1호에서 규정된 단속공무 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 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의 휘장 나. 흉장(개정 2005.09.30)

다. 신발(주차단속을 전담하

는 경우에 한함.)

정

아

개

<삭 제>

- 1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 (이하 "하동복"이라 한다), 방한복
- 2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

<삭 제> <삭 제>

2. <삭 제>

- 방법은 별표1과 같다
- 제6조(지급기준) 제복 등의 지급 <삭 제>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, 시 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 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 <u>다.</u>
- ② 제1항의 따라 제복을 만드는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은 서울특별 시장이 따로 정한다.